

수수료(제59조제1항 관련)

종별	수수료	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
1. 화학물질확인증명 신청	13,000원(매품목당)	11,700원(매품목당)
2. 금지물질 제조·수입·판매 허가 신청	13,000원(매품목당)	11,700원(매품목당)
3. 금지물질 제조·수입·판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	9,000원(매품목당)	7,200원(매품목당)
4. 허가물질 허가 및 재허가 신청	13,000원(매품목당)	11,700원(매품목당)
5. 제한물질 수입 허가 신청	13,000원(매품목당)	11,700원(매품목당)
6. 제한물질 수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	9,000원(매품목당)	7,200원(매품목당)
7. 유독물질 수입신고	13,000원(매품목당)	11,700원(매품목당)
8. 유독물질 수입 변경신고	9,000원(매품목당)	7,200원(매품목당)
9. 제한물질·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	13,000원(매품목당)	11,700원(매품목당)
10. 제한물질·금지물질 수출승인 변경 신청	9,000원(매품목당)	7,200원(매품목당)
11. 삭제 <2022. 1. 10.>		
12. 삭제 <2022. 1. 10.>		
13.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신청	30,000원	27,000원
14.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	20,000원	18,000원
15. 유해화학물질 취급도급 신고	13,000원	11,700원
16. 유해화학물질 취급 도급 변경신고	9,000원	7,200원
17. 유해화학물질 영업 재개 신고	13,000원	11,700원
18. 취급시설의 검사(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) 및 안전진단	시설규모별 인건비·경비 및 출장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	

비고 : 지방환경청장·유역환경청장·화학물질안전원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